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9일, 전진숙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2. 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전진숙 의원)

현행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
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과정은 그 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해외 중개업자의 지나친 영리행위와 이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환자에게 정확한 진료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도 함께 보고하게 하려는 것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 전반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불법 중개행위의 유무를 판단하여 제재처분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불법 유치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법제적 측면에서는 개정안이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를 ‘전년도 사업실적’에

포함하여 보고하게 하려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제31조제1항제2호는
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없 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에 관한 보고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 정비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함(안 제11조 및 안 부칙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2항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보고하는 전년도 사업실적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 제31조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을”로, “사업실적 등을”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사업실적을”로 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u>사업실 적</u>을 허위로 보고 한 자 3. (생 략) ②·③ (생 략)	<u>는 경우 외국인환 자별 유치 방법· 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 ·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 또 <u>는 제2항을---사 업실적 등을----</u>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 음) 부 칙 이 법은 <u>공포한</u> 날부 터 시행한다.	② (개정안 제3항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 ----- ----- ----- ----- -----. 1. (개정안과 같음) 2. 제11조제1항을-- -----<u>사업실 적</u>을----- ----- 3. (개정안과 같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부 칙 -----<u>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u>-----.
---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보고의무) ① (생략)	제11조(보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u>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